KOSHA GUIDE

C - 91 - 2015

프트 등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한다. 이때 크레인에는 불연재로 제작된 전용 탑승설비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한 구조활동을 하며, 탑승설비에는 크레인의 정격하중 등을 고려하여 탑승인원 제한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프트의 적재하중을 고려한 인원을 탑승시키고 피난안전구역에서만 출입문이 개폐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11)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위층에 위치한 근로자는 지상층으로 피난을 유도하며, 아래층에 위치한 근로자는 발화점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피난계단을 통하여 지상층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한다.
- (12) 화재를 진압한 경우에는 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더 이상 화재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13)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보수보강을 위한 근로자 이외의 자를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사고사례

본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화재· 폭발사고 사례 및 화재관련 사진을 정리하면 <별표 2>와 같다.